

서울특별시의회  
제299회 임시회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제안설명



2021. 2. 26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

최영주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!  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더불어민주당 최영주 의원입니다.
  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 
「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 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  
-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 
- 본 조례는 민원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고,  
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 
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.
  
- 또한 소관부서의 이관사항을 정비하여  
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모하고자 했습니다.
  
- 이에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였으며,  
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.
  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  
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·조정하여  
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,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 
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의 민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 
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 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